

#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2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7. 14.

발의자 : 권칠승 · 김승남 · 정춘숙  
김철민 · 임호선 · 민병덕  
김승원 · 강준현 · 도종환  
강병원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연간 3,000건 이상의 조정신청을 처리하고 있으나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모두 생업이 있는 교수, 변호사 등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 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, 협의회에 의한 분쟁 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(안 제14조).



##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”로 하고, “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 ·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”로 한다.

제14조제4항 중 “임명하거나 위촉하고”를 “위촉하고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.

제1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- ⑧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협의회의 구성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(이하 “조정원 협의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<u>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, 시·도에 두는 협의회(이하 “시·도 협의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</u>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④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<u>임명하거나 위촉하고</u>, 시·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<u>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u> &lt;후단 신설&gt;</p>	<p>제14조(협의회의 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-----</u></p> <p>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u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<u>위촉하고-----</u></p> <p>----- ----- ----- -----<u>.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</u></p>

<p>⑤ · ⑥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 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u>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.</u>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</u> <u>⑧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</u></p>
--	--